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62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박해철・박 정・김우영

강유정 · 임호선 · 문금주

장종태 · 김병기 · 최민희

이기헌 · 강준현 · 임미애

김 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의무도 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를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용자대표
- 2. 근로자대표
-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 유)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u>(4)</u>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 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 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 워회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 · 자격검정 등에 관한 --. <후단 삭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용자대표 <신 설> 2. 근로자대표 <신 설>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 제도 ·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신 설>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
	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